

( 불 임 3 )

판매론 거래기업 약정서

(구매기업용)

년 월 일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(인)

본 인 (인)

주 소 \_\_\_\_\_

인 감	
대 조	

판매론 거래기업 약정서 사본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.	인
--	---

\_\_\_\_\_ (이하 “본인” 이라 한다)은 \_\_\_\_\_  
 (이하 ‘판매기업’ 이라 한다)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 
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‘은행’ 이라 한다)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**제 1 조 목적**

본인이 판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을 은행의 판매론을 이용하여  
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거래조건**

- ① 본인이 판매기업에 대한 거래대금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않고, 거치나 할부 또는 만기  
일연장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,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 지급할 이자 및 거래에 따  
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판매기업과 은행이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 및 수수료 적용 기  
준에 따른다.
- ② 본인은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(HSBCnet 시스템을 말함)을 통하여 제 1 항의 이자  
율 및 수수료 적용기준을 확인한다.
- ③ 본인은 이 약정과 관련한 본인의 거래한도를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정한 또는  
판매기업과 은행이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이러한 **거래한도는 은행 또는  
판매기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**

- ④ 기타 거래조건은 판매기업과 은행이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르기로 하며 **판매기업과 은행의 판매론 약정서는 이 약정의 일부를 구성한다.**

### 제 3 조 매출채권양도승낙

판매기업이 매출채권 거래승인 요청시 해당 매출채권이 은행에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되며, 은행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본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한다.

### 제 4 조 판매론 결제

- ① 본인은 판매론 결제를 위하여 은행에 본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하여야 하며, 판매론 이용대금은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인은 대금결제일 이전이라도 판매론을 조기결제할 수 있으며, 그 경우 본인은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 및 용역의 거래대금 전액을 결제하기로 한다.
- ② 본인은 판매론 거래승인 후에 물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판매기업과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,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 입금한 경우에는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판매론을 상환하여야 한다.
- ③ 본인이 대금결제일에 판매론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,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판매론 약정서 제 10 조 제 3 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.

### 제 5 조 결제일 연장

- ① 판매기업이 결제일 연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경우, 본인은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거래승인 건별로 시스템, 우편(등기우편, 퀵서비스 또는 전문택배업체(DHL, FEDEX 등))를 이용한 서비스) 또는 은행 내방을 통하여 결제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거치 또는 할부로 결제하기로 거래승인한 경우에는 결제일을 연장할 수 없다.
- ② 제 1 항에 의거, 본인이 우편에 의하여 결제일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, 본인은 결제일 연장 신청서 발송 즉시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.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우편에 의하여 결제일 연장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, 통지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.
-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본인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결제일 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, 은행에 신고된 인감으로 날인된 팩스를 통해 결제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인은 팩스를 송부한 후 은행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. 다만, 팩스에 의한 결제일 연장 신청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익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한다.
- ④ 제 3 항에 따라 본인이 팩스를 통하여 결제일 연장을 신청한 경우, 은행이 은행에 신고된 본인 인감과 **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**한 때에는,

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정상요청건으로 간주하여 결제일 연장 신청을 처리하기로 한다. 또한 동 승인과 관련하여,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이 약정의 조건에 따른 은행의 행위에 대하여 **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.**

⑤ 결제일 연장이자율은 은행과 판매기업간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, 결제일연장이자는 연장된 결제일에 대출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다.

⑥ 결제일 연장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$$\text{결제일연장이자} = \text{결제일연장금액} \times (\text{만기일 CD 금리} + \text{결제일연장가산금리}) \times \text{신용공여일수} \div 365$$

(신용공여기간은 만기일로부터 연장된 결제일 전일까지의 일수)

### 제 6 조 압류, 가압류 등의 사유발생시 처리

① 본인은 은행이 거래승인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 3 채권자 등이 이를 압류, 가압류하거나 판매기업이 제 3 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, 이미 거래승인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**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**

② 은행은 제 1 항의 사유 발생시에는 신규 거래승인 및 거래대금의 입금을 중단하기로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미 판매기업이 할인신청하여 은행이 승인금액 중 일부라도 판매기업에게 입금한 경우, 또는 거래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은 거래승인한 내용대로 은행에 판매론을 결제하기로 한다.

③ 은행은 제 1 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한 업무를 재개한다.

### 제 7 조 면책

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본조에도 불구하고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3 조(손실부담 및 면책)를 적용하기로 한다.

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

②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, 외부요인에 의한 은행의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

③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

④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사항